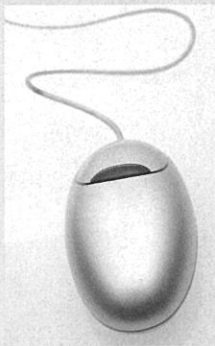


## — 공공구매입찰참여를 위한 세부내용



### 공공구매 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절차 세부내용

최근들어,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, 관공서 등 공공기관의 골판지상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하려면 참여기업들은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 이와 관련하여, 공공구매 입찰종류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.

## 공공구매 입찰참여를 위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절차 세부내용

최근들어,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,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골판지상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하려면 참여기업들은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. 이와 관련하여, 공공구매 입찰종류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.

### 1. 공공구매 입찰종류

#### 가. 중기간경쟁입찰제도

중소기업만 경쟁을 하고,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

- 대상 : 대기업은 배제,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과 조합이 참여 가능
- 기본요건 : 국내에서 직접 생산,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 
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10억원 이상

#### 나. 수의계약제도(소액수의)

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적격한 업체를 추천 받는 제도(영세 소기업의 수주 활성화,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)

- 구매대상 : 5천만원 이하의 경쟁제품
- 추천대상 :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, 소상공인으로 한정  
[소상공인,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]  
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

#### 다. 다수 공급자 물품계약제도(MAS, Multiple Award Schedule)

##### - 도입배경

최저가 중심의 단일 낙찰제(기존 일반경쟁 입찰 방식의 한계)

계약업무의 번잡, 과도한 시간소요

조달물자의 다양성 부족 및 수요기관의 선택권 축소

##### - MAS 개요

각 수요기관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규격화된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달청이 2인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

각 수요기관(공공기관)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

※ 조달청 나라장터([www.g2b.go.kr](http://www.g2b.go.kr))에서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운영

## 2. 직접생산확인 취지 및 목적

### 가. 직접생산확인의 취지

- 대기업, 수입제품의 납품 하청생산 등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지

### 나. 직접생산확인의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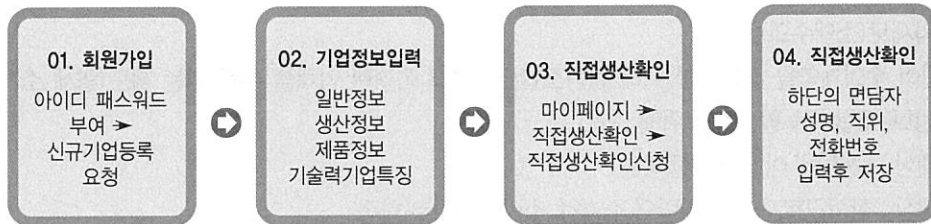
- 중기간 경쟁제품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경우 납품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의 무화
- 중기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에 대하여 각각 확인기준을 운영
- 확인기준 : 생산설비, 필수인력,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 확인

## 3. 직접생산확인 신청

### 가.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미가입 업체

(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)

표1.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



### ① 회원가입

-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에 화면 상단 : 회원가입“클릭  
→ “중소기업이용자” 클릭 → 이용약관 동의 →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입력 → 회원가입 신청 (신청 당일 회원승인 처리)

### ② 신규기업등록요청

-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 좌측 메뉴의 신규기업등록요청 클릭

### ③ 기업정보입력

- 일반정보, 생산정보, 제품정보, 재무정보, 기술력, 기업특징 입력  
(일반정보, 생산정보, 제품정보 까지 입력 후 기업특징으로 이동 우측 상단 최종승인 요청 버튼 클릭)
- ※ 제품정보 입력시 산업분류번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[17210] 선택, G2B 분류번호 : G2B  
물품분류명 - 골판지 홈 상자 [24112501] 선택

④ 직접생산확인 신청

- 마이페이지 “직접생산확인”클릭 -> 클릭 후 나타나는 하위메뉴의 직접생산확인신청”클릭 후 하단의 면담자 성명, 직위, 전화번호 등 기재 후 저장

나.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가입 업체(기한만료로 인해 재실사)

- ① 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기업 (“기업정보내역” 입력 기업)
- ② 직접생산확인은 최종승인일부터 2년까지만 유효
- ③ 표1의 03, 04번 참조

4. 직접생산확인 방법

가. 원칙적으로 생산을 위한 필수인력, 시설, 장비보유 및 주요 공정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

나. 물품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가가치 기여율 등을 기준에 추가하거나 일부 항목을 확인기준에서 제외

다. 직접생산확인은 물품별 특성에 다양성으로 인해 업계 스스로 조정 및 자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 (또는 중앙회)과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 민원발생 등 주요 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확인

라. 직접생산확인 시점은 입찰참여 전 단계, 생산 및 납품단계로 구분

마. 직접생산확인업체에 대한 제재

- 위반 업체 및 심사불응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삭제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
※ 조사내용

- 항목별 실태조사표에 의한(실사 및 증빙서류)조사표 작성, 해당 증빙서류 수집, 사진촬영
- 방문시각, 목적, 담당자, 증빙서류 준비 내용 등은 조사원이 사전 통보

